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1. .

제 안 자 : 김택호 의원 외 4인

1. 제안 이유

-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공동 상수도 요금 납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 (안 제6조의4)
 - 세대별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 공사비 및 시설 분담금은 세대별로 부담하며 주 계량기 다음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토록 함

3. 참고 사항

- 수도법 23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①관리인이 없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제6조의2 (전용급수장치의 설치) ① 제4조의 제1호의 전용급수 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u>단서 신설</u>) ② 생략 ③ 생략 (신설)	제6조의2 (전용급수장치의 설치)① - ----- ----- ----- 1. ----- 2 ----- ----- 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①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 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근거 마련

참 고 자 료

□ 수 도 법

第23條 (供給規程) ① 一般水道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料金, 給水裝置에 관한 工事의 費用負擔 기타 수돗물의 供給條件에 관한 規程을 정하여 수돗물의 供給을 開始하기 전까지 認可官廳(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水道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94.8.3, 1997.8.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함에 있어서 당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